

의안번호	2211794
의 퇴 인	한정애의원
회 답 일	2025.08.21.
추계번호	25C4082
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의2 (직무교육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사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(제1항) ○ 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음(제2항) ○ 직무교육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7조의2 (직무교육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직무교육(안 제17조의2)

- 보건복지부가 이용사 및 미용사의 직무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·미용사 단체에게 위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직무교육에 따른 비용은 직무교육의 방법, 범위, 수행 주체 및 보건복지부 지원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, 개정안은 직무교육의 세부 방법과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소요 비

용을 추계하기 어려움

- 참고로, 현행법 제17조¹⁾에 따라 현재 9개 영업자단체²⁾에서 업종별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, 피교육자로부터 실비 수준의 수강료를 받아 운영되며 보건복지부의 별도 예산은 지원되고 있지 않음
 - 현행 위생교육을 준용하여 각 이·미용단체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피교육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아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, 개정안은 직무교육의 실시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를 현시점에 판단하기 어려움
-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nabo.go.kr

- 1) 제17조(위생교육)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.
②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.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2) 숙박, 목욕, 이용, 미용(일반, 네일, 피부, 메이크업), 세탁, 건물위생관리